	규정	문서번호	TWP-A404	
		제정일자	2006. 05. 03.	
	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목 차

- 제1조 목적
- 제2조 정의
- 제3조 자격
- 제4조 연구년 기간
- 제5조 신청절차 및 선정
- 제6조 인원의 제한
- 제7조 신분
- 제8조 처우
- 제9조 강의의 대체
- 제10조 의무
- 제11조 휴직과의 관계
- 제12조 보칙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2006. 05. 03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

구 분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사무처장	교무처장	학생처장	산학협력처장	취업지원처장	기획홍보처장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

규정

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

문서번호

TWP-A404

제정일자

2006. 05. 03.

개정일자

2017. 12. 18.

개정번호


4

페이지

2/5

개정이력
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09. 01. 30.	· 1차 개정
2	2012. 03. 20.	· 연구년 교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및 교수업적평가 미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
3	2015. 04. 27.	·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
4	2017. 12. 18.	· 연구년 교원의 신청서 제출방법 단서 조항 추가 개정 · 연구년 신청 교원이 없을 경우 연구년 교원 추천 근거 규정 신설 · 동일전공 내 연속적인 연구년 교원 신청 제한 규정 신설 · 보칙 신설

	규정	문서번호	TWP-A404
		제정일자	2006. 05. 03.
	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
		개정번호	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에서 일정기간동안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학문발전과 본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원 연구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교수의 강의능력 신장을 위한 재충전 기회 부여
2. 새로운 산업체현장 기술분야 및 실무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
3.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 제공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연구년이라 함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교원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에만 전념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연구년을 부여 받은 교원을 의미한다.

제3조(자격) ①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에서 임용 후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원은 연구년 교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정년 퇴직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은 연구년 교원이 될 수 없다.

②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은 다시 연구년 교원이 될 수 있다.

제4조(연구년 기간) 연구년은 학기단위로 하되 1년 이내로 한다.

제5조(신청절차 및 선정) ① 연구년 교원이 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개시일 6개월 전 2월 또는 8월에 소속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연구년 신청 교원이 없을 경우 연구년 개시일 6개월 이내라도 추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.<개정 2017.12.18.>

② 연구년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
③ 연구년 교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근속기간
2. 연구년 부여회수
3. 국내외에서 6개월 이상 연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원
4.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할 교원

④ 당해 연구년 신청 교원이 없을 경우 근속년수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연구년 대상 교원을 추천할 수 있다.<신설 2017.12.18.>

⑤ 동일 전공 내에서 연속적인 연구년 교원 신청은 제한한다.<신설 2017.12.18.>

제6조(인원의 제한) ① 1연간의 연구년 교원의 수는 5%이내로 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404	
		제정일자	2006. 05. 03.	
	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② 전공의 연구년 교원의 수는 1명 이내로 한다.

제7조(신분)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.

제8조(처우) ① 연구년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년 중 학생지도비와 초과강의료를 제외한 보수전액을 지급한다.

② 연구년은 승진·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.

③ 연구년 교원의 당해연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2.3.20>

④ 연구년 교원의 당해연도 교수업적심사는 시행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2.3.20>

제9조(강의의 대체) 연구년 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전공의 다른 전임교원이 담당한다. 다만, 교과목 성격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강사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10조(의무) ① 연구년 교원은 교내·외를 막론하고 출강할 수 없으며 정부 기타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.

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,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교원은 차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

③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. 복귀 후 3년 이내에 사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교원에게는 연구년 중에 지급한 보수전액을 회수한다.

제11조(휴직과의 관계) ① 제3조의 자격산정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근무연수 산정에서 이를 감한다.

② 휴직중인 교원은 제3조의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연구년 교원이 될 수 없다.

제12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방침에 의한다.<본조신설 2017.12.18.>
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	규정	문서번호	TWP-A404	
		제정일자	2006. 05. 03.	
	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